제 3 장 창업실습

- 제 6 조(창업실습 교육과정) ①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공(복수전공 포함)과 관련된 분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- ② 본 과정은 자유선택 "창업실습1, 2" 교과목으로 개설한다.
 - ③ 지도교수는 창업중점교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승인한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할 수 있다.(개정 2022. 3. 1)
- ④ 교원 1인이 학기당 개설할 수 있는 창업실습 교과목은 3개 분반 이내로 제한한다. 제 7조(수강신청) 창업실습 교과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2인 이상 10인 이내의 팀으로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다.
 - 2. 창업중점교원 또는 위원회에서 멘토로 지정한 지도교수가 배정되어야 한다. (개정 2022. 3. 1)
 - 3. 제반 신청 서류를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
 - 4.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기 개시 전 창업지원센터에서 취합하고 교무처에 일괄 수강신청을 요청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- 제 8 조(학점인정) 창업실습 교과목이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 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학사일정상 교과목 운영 종료 후 시작품 등 창업준비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물과 지도교수의 종합평가서를 창업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.(개정 2022. 3. 1, 23.11.10)
 - 2. 취합된 결과물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.
 - 3.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무처에 해당학기의 성적반영을 일괄 요청한다.
- 제 9 조(이수학점) "창업실습1, 2" 교과목은 각 2학점 2시간으로 한다.
- 제 10 조(성적평가 및 표기) 창업실습 교과목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며, 성적은 P/NP로 처리하고 평점평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 11 조(기타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른다.